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89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확 정 일 : 2023년 4월 28일

시 행 일 : 2023년 5월 15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모니터링, 신고제도 등 사전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포함한 내부감사 全 과정에 대한 연간 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사항 간소화를 통한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도모,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부서(부) 명칭변경 반영

2. 주요골자

가. 연간 감사결과 보고 내실화 및 보고사항 간소화

○ 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등 연간 감사활동에 통합으로 연간 감사결과 보고 내실화 및 보고사항 간소화 (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6호의2)

- (**변경**) 다. 연간 감사결과(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삭제**) 가. 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나.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나.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부서(부) 명칭변경 반영

○ (**부서명칭**) 준법윤리감시단 → 준법감시관
(**부 명 칭**) LH인권윤리센터 → LH인권센터 (제13조제2항제6호의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3조제2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연간 감사결과(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제13조제2항제6호의2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가목 및 나목(종전의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준법감시관의 연간 활동결과

나. LH인권센터의 연간 활동결과

부 칙 <2023. 4. 28>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3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생략)	**제13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다음 사항의 감사결과 가. 감사원 감사결과 나.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4조에서 정한 감사(일상감사 제외)의 분기별 결과 다. 연간 감사결과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다음 사항의 감사결과 가. 감사원 감사결과 나.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4조에서 정한 감사(일상감사 제외)의 분기별 결과 다. 연간 감사결과(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 연간 감사결과 보고의 내실화 및 보고사항 간소화를 위한 조항이동
6의2. 다음 사항의 활동결과 가. 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나.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다. 준법윤리감시단의 연간 활동결과 라. LH인권윤리센터의 연간 활동결과	6의2. 다음 사항의 활동결과 <삭제> <삭제> 가. 준법감시관의 연간 활동결과 나. LH인권센터의 연간 활동결과	(현행 제13조제2항 제6호의2 가목 및 나목 이동) · 부서(부) 명칭변경 반영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11.25. 규정 제72호
개정 2021. 6.25. 규정 제247호
개정 2022.12. 2. 규정 제275호
개정 2023. 4.28. 규정 제2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제27조의2에 따라 구성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본부장, 부문장 및 연구원장(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와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 등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 1명과 비상임이사인 위원(이하 "비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개정 2021. 6.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감사위원이 되지 못하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

직원이었던 자. 다만, 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 25>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감사부서를 둔다.

제6조(위원의 임면) ① 위원 중 비상임감사위원은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비상임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사임 및 해임 등으로 제5조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비상임 감사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를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비상임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2.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감사위원의 활동지원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의 회의

제9조(회의의 종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

여 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 <개정 2022.12. 2>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 2>

⑥ 간사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 2>

제13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등의 법령, 정관 및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행위 중지 청구
2. 공사와 기관장 간의 소제기에 관한 대표권
3. 이사 등에 대한 경영활동 보고 요구
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자체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윤리규정 제정, 개정, 폐지 및 윤리규정·지침 등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자체감사계획

7.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감사부서의 연간 조직, 인원, 예산 등의 지원 요구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의 동의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등의 경영활동

2.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사항 <개정 2022.12. 2>

4.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결과

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6. 다음 사항의 감사결과

가. 감사원 감사결과

나. 「감사기준 시행세칙」제4조에서 정한 감사(일상감사 제외)의 분기별 결과 <개정 2021. 6. 25>

다. 연간 감사결과(실시간 감사시스템(RAS)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개정 2023. 4. 28>

6의2. 다음 사항의 활동결과 <신설 2021. 6. 25, 개정 2023. 4. 28>

가. 준법감시관의 연간 활동결과

나. LH인권센터의 연간 활동결과

7. 연간 감사교육계획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의 보고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10.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보고
11.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1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13.「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보고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 2>
1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해당 의안을 제안한 이사 등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는 일상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다.

1. 감사의 계획수립, 실시, 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사부서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감사부서 직원의 전보, 보직, 근무평정 및 인사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부대업무

②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지급 등) 비상임 감사위원에게는 회의참석여비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1. 11. 25>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전이거나 감사결과 공개 전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22. 12. 2>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감사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차 감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의안번호	의안제목	의안구분	소관부서

4. 내 용 : 붙 임. 끝.

년 월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5항 관련)

감사위원회 서면의결서

제　　목 :

표제의 붙임사항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서명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성명	서면의결 채택		안건채택	
	동의	부동의	찬 성	반대

간　사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제6항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수 신 :

제 차 감사위원회(. .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의안번호		소관부서	
건 명			

의결내용

년 월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 ○ 년월일	. . . 제 차 감사위원회

○ ○ 사 항

(부의안건 제목)

제 안 자 (또는 보고자)	
제출연월일	. . .
소관부서	

[별지 제5호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제 차 감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 :

4. 불참위원 :

5. 배 석 자 :

6. 기 록 자 :

7. 회의결과

소관부서	부 의 사 항		회의결과
	번 호	건 명	

20 년 월 일

감 사 위 원 : (인)
감 사 위 원 : (인)
감 사 위 원 : (인)